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52호 2018. 11. 30(금)

선 람	기관의 장

공고

- 남원시 공고 제2018-1928호 공인등록공고 ----- 1
- 남원시 공고 제2018-1931호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고 ---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공고 제2018-1928호

공인 등록 공고

남원시 공인 조례 제7조의2(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) 규정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9조(공고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1월 26일



□ 전자이미지공인 신조 등록 [재정과]

1. 공인 등록사유 :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으로 발급되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무료발급하기 위해 정부24(www.gov.kr)시스템에 '남원시장'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
2. 공인 등록 일 : 2018. 11. 26.
3. 관련 조 례 : 남원시 공인조례 제7조의2
4. 등록 공인명 및 인영

구 분 (폐기/등록)	공인명	규격 (cm)	형태	인영	관리부서
등록	남원시 장 인	3.0cm×3.0cm 정방형	전 자 이 미 지		재정과

남원시 공고 제2018-1931호

『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1월 26일

남 원 시 장

1. 개정이유

『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』 제3조(지원대상)을 운영함에 있어, 최근 정부의 청년고용 촉진의 기조에 맞춰 신청연령을 상향조정하여 보다 많은 관내 출신의 청년근로자에게 남원시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기준일 및 지원대상의 신청 연령 상한선 상향 조정(안 제3조)

나. 취업일 기준 만15세 ~ 30세 → 신청일 기준 만15세 ~ 34세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(1)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
(2)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우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경제과 기업지원담당

다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이메일(hyeeun11@korea.kr), 직접방문,

FAX(063-620-6712) 등

4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경제과(☎063-620-635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붙임 1. 「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」 일부개정(안)

2. 의견제출서 1부.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8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 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

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8. 11. .
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 : 경 제 과 장

1. 개정이유

「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」 제3조(지원대상)을 운영함에 있어, 최근 정부의 청년고용 촉진의 기조에 맞춰 신청연령을 상향조정하여 보다 많은 관내 출신의 청년근로자에게 남원시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기준일 및 지원대상의 신청 연령 상한선 상향 조정(안 제3조)

- 취업일 기준 만15세 ~ 30세 → 신청일 기준 **만15세 ~ 34세**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5조(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)

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(청년의 나이)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8. 11. 26 ~ 2018. 12. 17

- 결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취업일 기준 만 15세에서 30세”를 “신청일 기준 만 15세에서 만34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 대상) 이 조례에 따라 애향장려금(이하 "장려금"이라 한다)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취업일 기준 만 15세에서 <u>30세</u>까지의 근로자로서 관내 취 업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3조(지원 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신청일 기준----- <u>34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